

# 산림형질변경및국도지비원사업조사이유서

발의일자 : 1999.11.3

발 의 자 : 김완규의원외6인

## 1. 조사목적

지방자치법 제36조및제37조,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 
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애  
의거 집행부 산림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함.

## 2.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

### 가. 조사대상기관

- 군 본청 임업경영과

### 나. 사무의 범위

- '97. '98. '99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현황
- "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
- " 국도비지원사업 현황
- '98 수해복구사업

## 3. 조 사 위 원 회

-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

## 4. 조사발의이유

- 가. 최근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산림황폐화의  
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
- 나. 산림분야 국도비지원사업등의 사업추진에 있어 미흡하다는  
주민여론이 있음에 따라
- 다. 산림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을  
돌출 시정·보완하기 위함.